

## □ 타전공 개설과목 대체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

제정 2022. 6. 13.

개정 2022. 7. 22.

### 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<자유전공학부 졸업규정>에 따라 타전공 개설과목을 자유전공학부 전공과목 18학점 중 전공선택 대체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정의)

타전공 개설과목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선택하여 승인 받은 주전공, 부전공, 연합전공, 연계전공의 전공필수/ 전공선택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전공 교과목을 의미한다.

### 제3조(이수 시기)

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에 이수한 과목만 대체인정 대상에 포함한다.

1. 학생의 전공(주전공, 부전공, 연합전공, 연계전공, 심화전공) 중 마지막으로 진입한 전공의 직전 정규 학기까지 포함하며, 계절학기는 제외한다.
2. 등록 정규 학기 6학기(3학년 2학기) 까지만 포함하며, 6학기 이전의 계절학기는 포함한다.

### 제4조(대체인정 대상 요건)

①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과목만 대체인정 대상에 포함한다.

1. 서울대학교에서 개설된 학과(부) 전공과목으로 한정하며, 아래 과목은 제외한다.
  - 가. 처음부터 [일반선택]으로 개설되는 과목
  - 나. 대학원 개설과목
  - 다. 승인 받은 전공의 졸업기준 이수 학점을 초과하는 전공과목
2. 성적평가방식이 A-F 인 과목만 포함한다.

② 타전공 개설과목으로, 승인받은 전공의 졸업기준 이수 학점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대체인정 대상에 포함한다.

### 제5조(기타사항)

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부장이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칙 (2022.06.13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07.22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